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161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박숙영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가소31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30.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36226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산 임야 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8.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5. 2. 27.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접토지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토지에 통합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36226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건물 사이의 공

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면적·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하여야 하고,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소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지적공부의 정리를 누락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 및 등기부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방치하고,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지적공부와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시점은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에 통합되고 그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1977. 9. 23.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또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멸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각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경락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7,12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등 총 650,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락대금 7,120,000원과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650,000원 등 합계 7,770,000원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일인 2014.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